특화단지재직자교육 신청시 제출서류 서식

□ 신청시 제출 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서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서식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방자치단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서식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서식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 반드시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가능

※ 신청자(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서식 제1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산업통상부		세부사업명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			
전문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역사업명		특화단지재직자교육			
공고번호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 - 000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			
			연구개발과제번호		P00‥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X12. 교육 및 인력양성	50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기술분류 부처기술분류	X12. 교육 및 인력양성	50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연락처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2026. 03. 01 - 2026. 12. 31 (10개월)						
	1단계 1년차	2026. 03. 01 - 2026. 12. 31 (10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	-			
1단계 1년차				-	-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직인 생략)

산업통상부 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세부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 1순위(X12. 교육 및 인력양성 50%)는 수정 불가하며 2~3순위는 해당 기술 및 사업 분야에 맞게 50% 수준으로 배분, 2~3순위 없을시 1순위 100%로 기재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 1순위(X12. 교육 및 인력양성 50%)는 수정 불가하며 2~3순위는 해당 기술 및 사업 분야에 맞게 50% 수준으로 배분, 2~3순위 없을시 1순위 100%로 기재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6) 컨소시엄 기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세부사업명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		
내역사업명	특화단지재직자교육		연구개발과제번호		P00··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X12. 교육 및 인력양성	50%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기술분류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X12. 교육 및 인력양성	50%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6. 03. 01 - 2026. 12. 31 (총 10개월)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연구개발과제 단계	기타[∨]		연구개발과제 유형/특성		인력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사업목표 2. 사업 추진내용 3. 추진방법 4.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세부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1순위(X12. 교육 및 인력양성 50%)는 수정 불가하며 2~3순위는 해당 기술 및 사업 분야에 맞게 50% 수준으로 배분, 2~3순위 없을시 1순위 100%로 기재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제외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제외(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제외(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연구개발계획서 목차

Ⅰ. 수행계획 ····· 0
1-1. 과제 필요성 ····· 0
1) 추진 배경 ····· 0
2) 정부 정책 ····· 0
3) 산업.시장 동향 ····· 0
1-2. 과제 목표 및 내용 ····· 0
1) 최종목표 ····· 0
2) 연차별 목표 ····· 0
3) 추진 내용 ····· 0
1-3. 과제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0
1) 추진전략.방법 ····· 0
2) 추진체계 ····· 0
1-4.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0
1) 성과의 활용방안 ····· 0
2) 성과의 기대효과 ····· 0

Ⅱ. 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0
2-1. 연구개발기관 현황 ····· 0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 0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 0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 0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 0
2-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 0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 0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0

붙임1. 용역과제계획서 ····· 0
붙임2.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세부내역 ····· 0

〈 평가지표 기준 요약문 〉

평가항목 및 요소	관련내용 요약작성	쪽번호
□ **수행계획의 충실성[70점]**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10점]**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내용 요약하여 작성(2페이지 내외)*	*본문내 쪽번호*
•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45점]** - 최종 및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 교육생 모집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 우수사례발굴 및 성과확산 계획의 적절성 - 산학협력 체계구축 및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 **연구개발과제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적절성[15점]**		
□ **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10점]**		
• **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연구개발 역량[20점]**		
• **연구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절성** •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I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1-1. 과제 필요성

1) 추진 배경

2) 정부 정책

3) 산업 · 시장 동향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 과제 추진 필요성을 기재
- 과제 관련 정부 정책(소부장, 인력양성 관련 등) 및 산업 · 시장 동향을 기재
- 10페이지 내외로 작성

1-2. 과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 과제 비전, 목적, 최종 목표 및 성과 등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기재

2) 연차별 목표

(1) 총괄 성과지표 및 목표

구분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26	계
필수 지표	교육인원 수		명	*작성예시*	
	수료인원 수		명	*100*	
	교육 수료율		%	*≥90*	
	교육과정	운영 수	건	*12*	
		개발 수	건	*≥1*	
	교육 수요조사		건	*70*	
	교육생 만족도		점	*≥80*	
	숙련도 변화율		%	*≥110*	
	테스트베드 인프라 활용률		**%**	***≥70***	
자율 지표	*온/오프라인 홍보*		*건*		
	교육교재 개발		*건*		
	위원회 운영		*건*		
	...				
	...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 과제를 통해 지원받는 5년 동안의 목표치를 기재
■ 필수지표는 변동불가, 자율지표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정하되 지표별 설명 기재
■ 필수지표 정의
- 교육인원 수(명) : 교육과정에 참가한 인원수
- 수료인원 수(명) : 교육과정에 참가하여 교육시간 80% 이상을 수료한 인원수
- 교육 수료율(%) : (수료인원 수 ÷ 교육인원 수) x 100
- 교육과정 운영 수(건) : 해당연도에 개설·운영된 전체 교육과정 수
- 교육과정 개발 수(건) : 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과정 신규 개발(개선 포함) 수
- 교육 수요조사(건) : 차년도 교육과정 개발/개선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한 건수(=응답인원 수)
- 교육생 만족도(건) : 교육 참가자 대상 조사된 교육 만족도 점수
- 숙련도 변화율(%) : 교육과정 수료 전/후 자가 평가를 통한 교육생의 직무 분야 숙련도 변화율

■ 협약시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수정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사유 명기

(2) 성과지표 정의 및 산출근거(자율지표 대상 작성)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 성과지표에 대한 정의, 산출근거, 성과증빙 등에 대해 작성

구분	성과지표명		단위	성과지표 정의 및 산출근거
필수 지표	교육인원 수		명	- (지표정의) 동 사업을 통해 운영된 교육과정에 참가한 인원수 - (산출근거) 수료인원 150명 달성을 위해 수료율 90% 고려하여 산출 - (성과증빙) 교육신청서 및 성과관리 Excel파일의 교육생 명단
	수료인원 수		명	- (지표정의)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수료한 인원수 - (산출근거) 제안요청서(RFP) 교육목표를 기준으로 연간 1000명으로 산출 - (성과증빙) 성과관리 Excel파일의 교육생 수료 여부
	교육 수료율		%	- (지표정의) 수료인원 수 ÷ 교육인원 수 x 100 - (산출근거) 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재직자의 교육 중단 및 직장 복귀 등을 고려하여 약 90% 이상으로 산출 - (성과증빙) 성과관리 Excel파일의 교육생 명단 및 수료 여부로 산출
	교육과정	운영 수	건	- (지표정의) 해당연도에 개설·운영된 전체 교육과정 수 - (산출근거) 제안요청서(RFP)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00건으로 산출 - (성과증빙) 결과보고서 및 성과관리 Excel파일의 교육과정 정보
		개발 수	건	- (지표정의)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개발(개선 포함)되는 교육과정 수 - (산출근거) 제안요청서(RFP)의 사업내용(체계화)을 기준으로 1건 산출 - (성과증빙)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심의결과 및 교육운영계획서 등
	교육 수요조사		건	- (지표정의) 차년도 교육과정 개발/개선을 위해 소부장 관련 기업 관계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건수 - (산출근거) 제안요청서(RFP)의 교육방법을 고려하여 00건으로 산출 - (성과증빙) 수요조사서 양식 및 응답 내용의 취합·분석 결과보고서
	교육생 만족도		점	- (지표정의) 교육 수료자 대상 조사된 교육 만족도 점수 - (산출근거) 제안요청서(RFP)의 사업내용(활성화)을 고려하여 00점 산출 - (성과증빙) 만족도조사 양식 및 응답 내용의 취합·분석 결과보고서
	교육생 숙련도 변화율		%	- (지표정의) 동 사업의 교육과정 수료 전/후 자가평가를 통해 교육수료자의 직무 숙련도 변화 측정 - (산출근거) 교육후 점수 ÷ 교육전 점수 x 100 - (성과증빙) 자가평가표 등
	테스트베드 인프라 활용률		**%**	**- (지표정의) 동 사업의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테스트베드 인프라 활용율 측정 - (산출근거) 테스트베드 활용 교육과정 수 ÷ 전체교육 과정 수 x 100 - (성과증빙) 결과보고서 및 성과관리 Excel파일의 교육과정 정보**
자율 지표	*온/오프라인 홍보*		*건*	- (지표정의) - (산출근거) - (성과증빙)
	교육교재 개발		*건*	- (지표정의) - (산출근거) - (성과증빙)
	위원회 운영		*건*	- (지표정의) - (산출근거) - (성과증빙)
	...			- (지표정의) - (산출근거) - (성과증빙)
	...			- (지표정의) - (산출근거) - (성과증빙)

3) 추진 내용

(1)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계획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① 교육과정 기획 및 산업계 수요조사
* 교육과정 기획을 위한 프로세스 및 추진내용
* 해당 교육과정 기획시 위한 산업계 수요조사(방법/절차/결과 등) 내용 기재

② 교육과정 체계도 및 운영방안
* 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교육과정 체계도(커리큘럼) 운영 계획 기재
* 교육과정 운영방안 제시시 중장기 운영 로드맵 기재
* 교육과정 세부내용 작성시 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이론/실습 구분, 실습 활용장비, 교육내용, 교육차수(시간), 직무/과정 수준 등 RFP 제시내용을 반영하여 기재

<교육과정 세부내용 작성 예시>

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이론/실습 구분)	교육내용	교육차수(시간)	활용장비	직무수준

③ 강사진 확보 및 인프라 활용방안
* 대내·외 전문 강사진 Pool 구축(구분/소속/성명/직위 등) 및 활용방안 제시
* 시설, 장비 등 인프라 확보 및 지원방안 제시

④ 연구개발기관 간 협력 방안
*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목 개발·개선 등 협력 방안 제시

① 교육과정 기획 및 산업계 수요조사

② 교육과정 체계도 및 운영방안

③ 강사진 확보 및 인프라 활용방안

④ 연구개발기관 간 협력 방안

(2) 교육생 모집 및 지원 계획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 교육생 모집 계획 및 방법.일정 등 세부계획 기재

(3) 우수사례발굴 및 성과 확산 계획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 자체성과평가, 기업 인터뷰 등 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방안 기재
■ 교육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방안 기재

(4)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해당시 작성)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 총괄운영위원회(구분/소속/성명/직위) 등 구성 및 운영 방안 기재
■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에 산업계 참여 방안 제시 등

4) 수행일정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과제 수행일정 추진 내용과 부합되게 구체적으로 기재

1-3. 과제 추진전략 • 방법 및 추진체계

1) 추진전략 • 방법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추진체계

작성 예시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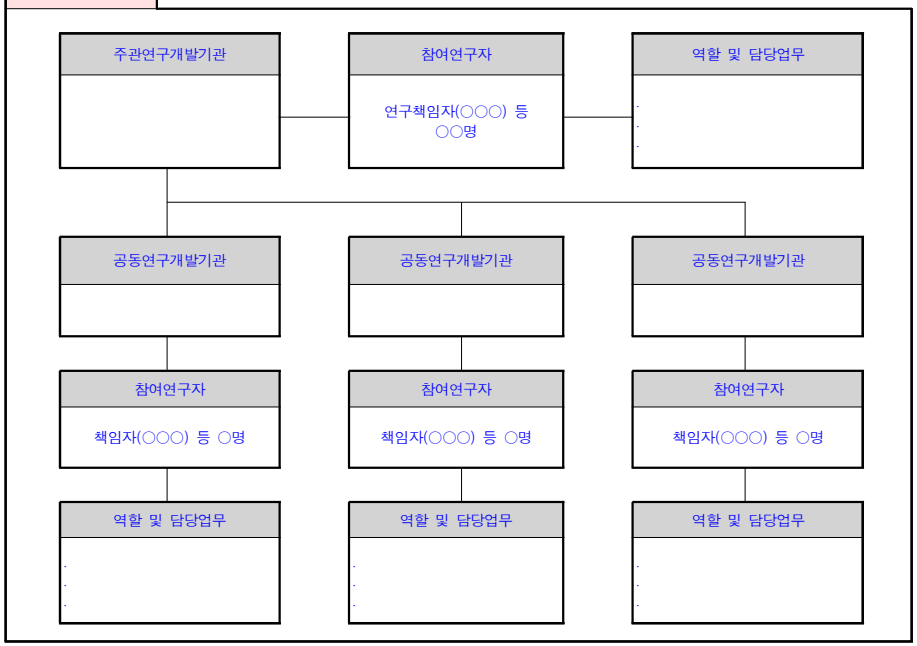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컨소시엄 구성 및 기관별 역할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1-4.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성과의 활용방안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예상되는 성과와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 (또는 향후 연계 지원 방안 등을 기재)

2) 성과의 기대효과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학술적,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기대효과 • 파급효과 등을 기재

Ⅱ 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2-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당시 소속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 인력양성 목적 과제 포함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당시 소속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 인력양성 목적 과제 포함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3) 참여연구자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참여연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단계			2단계	
									1년	2년	3년	1년	2년
									O		-	-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 인력양성 목적 과제 포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6부터 순번 8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구분 \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설립 연월일				
6	주생산 품목		-	-	-
7	전년도 매출액		-	-	-
8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	-
9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수행역량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4)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참여연도를 기재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참여연구원 및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수혜학생 기재)
      가)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국가,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6부터 순번 18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 계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소계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연구개발비 합계)*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붙임 1] 용역과제계획서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용역과제별로 기재(용역기관 미정일 경우 미정으로 작성)

용 역 과 제 계 획 서

과 제 명			
책 임 자	(성명/직위)	(생년월일/성별)	
	(소속기관/부서)	(사업자등록번호)	
용역기간		**용역과제비**	(천원)
필 요 성			
목표 및 내용			
수행방법			
활용계획			
용역기관 및 용역과제책임자 선정근거			

[붙임 2]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세부내역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의 '(3)연구기관별-연차별 사업계획'의 해당연도 수치와 일치하게 작성
- 기관별 프로그램별 연구개발비 및 사용계획 세부내역 작성

1. 당해연도 프로그램별 연구개발비(단위 : 천원)

연구개발기관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참여연구자)	교육과정 기획/개발비	교육과정 운영비	실습재료 및 장비가동비	연구 수당	기타 (여비 등)		
OOOOO	정부출연금								
	민간현물								
	소계								
OOOOO	정부출연금								
	민간현물								
	소계								
OOOOO	정부출연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정부출연금								
	민간현물								
	합계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세부내역(기관별, 단위 : 천원, %)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단위 : 천원, %)

비 목 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합계	비율
		현금	현물		
1. 직 접 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 · 장비비					
1-4. 연구재료비					
1-5. 연구활동비					
1-6. 연구수당					
2. 간 접 비					
합 계					100.0%

(1) 인건비

세분류 (사용용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기간 (개월)(B)	인건비계상률 (%)(C)	합계(A×B×C/100)		
							현금	현물	계
참여 연구자	기존/ 신규								
		소계							
		합계							

(2) 학생인건비

세분류 (사용용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기간 (개월)(B)	인건비계상률 (%)(C)	합계(A×B×C/100)		
							현금	현물	계
학생 인건비	석사/ 박사								
	행정								
	합계								

(3)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개발					
		구매					
		임대					
		용역					
합계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
* 연구기자재 구입은 지양 (기구축 장비 활용)

(4) 연구재료비

품명	용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현금	현물	비고
구입비								*실습 재료비*
관리비								
제작비								
합계								

(5) 연구활동비

구분	활용목적	산출내역	금액	비고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전문가활용비*			*교육과정 운영비*
				교육과정 개발비
회의비	*식대*			
회의비	*임차료*			*교육과정 운영비*
회의비				*교육과정 기획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유지비*			
연구실운영비	*사무용품비*			
연구실운영비	*비영리법인의연구실소모성경비*			
연구인력 지원비	*야근식대*			
연구인력 지원비				
그 밖의 비용*	*위탁정산수수료*			*기타*
합계				

*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위탁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2] 참조

(6) 연구수당

구분	산출내역	비율(%)	금액	비고
연구수당				
합계				

*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10%이내

** 2022년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증액 불가

(7) 간접비

구분	산출내역	비율(%)	금액	비고
간접비	*직접비의 XX%*			
합계				

*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 이내로 산정,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상기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서식 제2호)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기관 공통)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특화단지재직자교육)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연구소(홍길동), ○○대학(이순신)		

위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과제 수행에 동의하며, 본 연구개발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과제 수행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본 기관에서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한 연구개발과제(학생)인건비계상률을 확인 및 관리하고, 총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초과하여 인건비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학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나머지 각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대표하여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_____ _____ (인) _____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_____ _____ (인) _____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_____ _____ (인) _____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법인기관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별 낱장 제출도 가능함

(서식 제3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연구개발기관별)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특화단지재직자교육)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기간	20 . 08. 01. ~ 20 . 12. 31. (00개월)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국가연구자번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3책/5공)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자필서명)
		연구책임자			90% (2/5)	
		연구자				
		연구자				

연구개발기관 동의란

연구개발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 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 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국가연구자번호

□ 고유식별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 (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감사원, 권익위 등 정부기관, 한국산업기술기술진흥원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생략)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1)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기재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기재
2)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3) 전체 인건비계상률에는 연구개발과제가 선정 될 경우, 연구개발시작일 기준으로 본 과제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계상률과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를 3책5공으로 표기(연구근접지원인력은 해당사항 없음)하여 기재하여야 함
- (예시) 연구개발시작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수는 5개 수행중이며 5개 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연구책임자를 2개를 맡을 경우 2/5로 기재

※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연구윤리 · 청렴 · 인권 및 보안서약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특화단지재직자교육)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기간	20 . 08. 01. ~ 20 . 12. 31. (00개월)		

소속기관	성명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동의 (자필서명)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청렴 및 인권존중 서약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과제 수행에 있어 내·외부 이해관계자 및 참여인력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평등한 관계에서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법령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생략)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연구개발기관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별 낱장 제출도 가능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도 포함하여 기재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기재

(서식 제5호)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지자체별)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특화단지재직자교육)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기간	20 . 08. 01. ~ 20 . 12. 31. (00개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현물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연차별 현금 및 현물 부담(확약) (단위 : 천원)

구분	1단계					계
	1차년도 (202 년)	2차년도 (202 년)	3차년도 (202 년)	4차년도 (202 년)	5차년도 (202 년)	
현 금						
현 물						
합계						

* 당해연도 지방비 납입 예정일 : 20xx. 00. 00.

2. 연차별 현물 부담금액 및 내용 *(단계별 연차에 맞게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1차년도(202 년)	2차년도(202 년)	3차년도(202 년)
인 건 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연구시설. 장비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4차년도(202 년)	5차년도(202 년)	합계
인 건 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연구시설. 장비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계				

* 별첨 : 구입가 공시지가 등 현물납입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0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인)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현물 산정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참고

(서식 제6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납입확약서 (연구개발기관별)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특화단지재직자교육)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기간	20 . 08. 01. ~ 20 . 12. 31. (00개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현물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연차별 현금 및 현물 부담(확약) (단위 : 천원)

구분	1단계					계
	1차년도 (202 년)	2차년도 (202 년)	3차년도 (202 년)	4차년도 (202 년)	5차년도 (202 년)	
현 금						
현 물						
합계						

2. 연차별 현물 부담금액 및 내용 *(단계별 연차에 맞게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1차년도(202 년)	2차년도(202 년)	3차년도(202 년)
인 건 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연구시설. 장비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4차년도(202 년)	5차년도(202 년)	합계
인 건 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연구시설. 장비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계				

* 별첨 : 구입가 공시지가 등 현물납입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대 표) (인)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현물 산정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참고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특화단지재직자교육)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기간	20 . 08. 01. ~ 20 . 12. 31. (00개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현물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연차별 현금 및 현물 부담(확약) (단위 : 천원)

구분	1단계					계
	1차년도 (202 년)	2차년도 (202 년)	3차년도 (202 년)	4차년도 (202 년)	5차년도 (202 년)	
현 금						
현 물						
합계						

2. 연차별 현물 부담금액 및 내용 *(단계별 연차에 맞게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1차년도(202 년)	2차년도(202 년)	3차년도(202 년)
인 건 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연구시설. 장비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4차년도(202 년)	5차년도(202 년)	합계
인 건 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연구시설. 장비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계				

* 별첨 : 구입가 공시지가 등 현물납입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0 년 월 일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 표) (인)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현물 산정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참고

※ 연구개발기관별 각각 작성하여 제출

(서식 제7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개발기관별)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특화단지재직자교육)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기간	20 . 08. 01. ~ 20 . 12. 31. (00개월)		

검토 내용	해당 여부	
	예	아니오
☐ **공고 내용 부합 여부**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 **인건비 계상률 초과, 최소 인건비 계상률 등 준수 여부**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는가?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최소 참여 인건비계상률은 10%를 충족하지 못하는가?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해당 신청기관과 상이한가?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제출일자 : 20 . . .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 (인)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